

4. 새로운 제11-다장(모범규제관행)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

**“제11-다장
모범규제관행**

**제11다.1조
목적 및 범위**

1. 이 장의 목적은 다음에 의한 양자 무역 및 투자, 경제 성장, 그리고 고용 증진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 간 모범규제관행과 규제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가.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촉진하는 것

나. 양립 가능한 규제 접근방식을 촉진하고 불필요하게 부담이 되거나 중복되거나 상이한 규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

다. 각 당사국의 규제 조치, 관행 또는 접근방식(그 효율적 적용을 보장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라. 국제 포럼에서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수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2. 당사국은 자국의 법 체계, 관행 및 자국의 규제 체계의 바탕이 되는 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에 따른 모범규제관행 및 규제 협력에 대한 자국의 접근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3. 이 장은 당사국에 다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다음에 대한 자국의 절차에서 벗어날 것

1) 자국의 규제 우선순위의 식별

2) 규제 조치의 준비 및 채택, 또는

3) 그 당사국이 자국의 공공정책 목적(건강, 안전 및 환경적 목적을 포함한 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여기는 보호 수준의 보장

나. 규제 조치의 적시 채택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조치, 또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리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조치를 취할 것, 또는

다. 특정한 규제 결과를 달성할 것

제11다.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규제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부처

나. 영국의 경우, 중앙정부부처, 그리고

규제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 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에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과 관련되고 기업에 관한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 행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3)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4)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 및 보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5)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 소집,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6)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7)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8) 관세에 관한 사항, 그리고
- 9) 정부 조달에 관한 사항

나. 영국의 경우,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항과 관련되고 기업 활동에 관한

- 1) 영국 의회의 법률, 또는
- 2) 영국 의회의 법률에 따라 장관이 제정한 위임 입법으로서

다음은 제외한다.

가) 모든 세금, 관세, 부담금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부과, 폐지 또는 변경하는 모든 조치(또는 그 조치와 관련된 모든 조치)

나) 공공 부문 조달과 관련된 모든 조치, 그리고

- 다) 공공 당국에 의한 또는 이를 대신한 보조금 또는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의 부여와 관련된 모든 조치

제11다.3조

내부 조정 절차

1. 각 당사국은 모범규제관행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조정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이러한 절차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규제 조치의 개발에서 모범규제관행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나. 조정 기구를 설치 또는 유지하는 것

제11다.4조

규제 절차에 대한 설명

각 당사국은 규제 조치를 개발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자국의 규제 당국이 이용하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설명은 관련 법, 규정, 규칙 또는 절차를 지칭한다.

제11다.5조

공공 협의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 당국에 의한 협의의 활용을 촉진하는 절차를 갖춘다.

2. 제안된 주요¹ 규제 조치를 준비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규칙 또는 절차에 따라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가. 이해관계인이 제안된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조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공표한다.

나. 이해관계인에게 제안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허용한다. 그리고

다. 그 의견을 검토한다.

3. 제2항나호는 당사국이 이해관계인과 특정 대상 협의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각 당사국은 전자적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의견 제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공 협의와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에 무료로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5. 각 당사국은 각국의 법, 규정, 규칙 또는 절차에 따라, 자국의 규제 당국이 이 조에 언급된 공공 협의에 대응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각 당사국은 접수된 의견이 제안된 규제 조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하도록 권장된다.

제11다.6조

규제영향평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규칙 또는 절차에 따라, 준비 중인 주요 규제 조치에 대하여 비례적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비례적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규

¹ 당사국의 규제 당국은 이 장에 따른 자국 의무의 목적상 무엇이 “주요” 규제 조치를 구성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제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 가. 주요 규제 조치가 다루고자 의도하는 문제의 성격과 중요성을 포함하여, 그 규제 조치의 필요성을 평가한다.
- 나. 규제하지 않는다는 선택사항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할 모든 실현 가능하고 적절한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 다. 평가는 관련 과학적, 기술적, 또는 경제적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획득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다.

3. 각 당사국은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적절한 경우 제안된 주요 규제 조치의 일련의 가능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 이는 중소기업²에 대한 그 조치의 잠재적 영향을 포함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영향평가의 결과를 자국의 관련 법, 규정, 규칙 또는 절차에 합치되고 시의적절하게 공표한다. 각 당사국은 선택된 방안이 자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한다고 결론 내린 근거를 설명하도록 권장된다.

제11다.7조

규제 조치에 대한 접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 조치가 온라인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쉽게 검색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11다.8조

사후 평가

² 영국의 경우, 이 장의 목적상, “중소기업”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1. 각 당사국은 주요 규제 조치에 대하여 주기적인 사후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규정, 규칙 또는 절차에 따라, 자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주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자국의 주요 규제 조치를 검토하도록 노력한다. 사후 평가를 수행할 때, 당사국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가. 그 규제 조치가 목적에 계속하여 부합할 것인지 여부, 또는

나. 자국의 공공정책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포함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부

제11다.9조

규제 협력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원활히 하고 제11다.1조제1항에 상정된 이익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규제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정보 교환, 대화 또는 회의

1) 규제영향평가, 사후 평가 및 규제 관행의 준수를 포함하여, 규제 도구 및 수단에 관한 경험의 교환, 또는

2) 공통된 접근방식의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또는 기존의 규제 조치에 대한 정보의 교환

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이해관계인과의 정보 교환, 대화 또는 회의

다. 훈련 프로그램, 세미나 및 그 밖의 관련 지원, 또는

라.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협업 모색

3. 당사국은 제11다.10조에 따라 지정된 자국의 연락처를 통하여,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관련 규제 당국과의 접촉을 통하여 협력 활동을 제안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제안을 시의적절하게 검토하고 응답하도록 권장된다.

4. 양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규제 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한쪽 당사국이 규제 협력 활동에의 참여를 거부하거나 이를 철회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5. 각 당사국은 규제조치를 계획할 때, 자국의 규제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규제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적, 지역적 및 그 밖의 포럼에서의 관련 동향을 고려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1다.10조

연락처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연락처를 지정하고,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자국 연락처의 모든 변경은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된다.

2. 연락처는 이 장과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부속기구 또는 그 밖의 연락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다.11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이 협정의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이 우선한

다.

제11다.12조

분쟁해결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도 제14장(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없다.”